

광주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29348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형섭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 16.

판 결 선 고 2024. 5. 21.

## 주 문

1. 피고는 D(제3채무자)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21. 11. 11.자 양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및 인정근거

별지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채무자 B가 아닌 B의 처 E에게 2020. 3. 24. 금원을 대여를 한 것으로 B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고, ② 약속한 이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2021. 11. 11. B를 만나 이 사건 임차보증금채권의 양수를 받게 된 것이며, 자신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정도의 사실만을 알았을 뿐 B의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는 못하였으므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것은 아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는 채무자 B의 사해행위 당시 B와 일면식도 없었다는 등으로 자신은 선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의 처인 E와는 고액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는 사이였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

별지